

# 「사업자우대적금」특약

#### 제1조 적용범위

사업자우대적금(이하 '적금'이라 합니다)거래는 이 특약을 적용하며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예금거래기본약관 및 적립식예금약관을 적용합니다.

## 제 2 조 가입대상

이 적금의 가입대상에는 개인사업자, 법인, 고유 번호(또는 납세번호)를 부여받은 임의단체로 합니다.

### 제 3 조 예금과목

이 적금의 예금과목은 정기적금으로 합니다.

#### 제 4 조 계약기간

이 적금의 계약기간은 1년 이상 3년 이내 월 단위로 합니다.

## 제 5 조 저축방법 및 납입한도

- ① 이 적금은 월 1만원이상 원 단위로 매월 약정한 날짜에 동일한 금액을 저축하여야 합니다.
- ② 초회 납입금 한도는 기존계좌의 초회 납입금을 포함하여 1인(업체) 당 최대 1천만원입니다.

#### 제6조이자

이 적금의 이자는 신규가입일 당시 영업점 및 KB국민은행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율(이하 '기본이율'이라 합니다)로 셈하여 원금과 함께 지급합니다.

#### 제 7조 우대이율

- ① 이 적금은 제 2 항 내지 제 3 항의 우대이율을 적용합니다. 단, 모든 우대이율은 만기해지 계좌에 대하여 계약기간 동안 신규가입일 당시 영업점 및 KB국민은행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율을 적용합니다.
- ② 녹색성장 우대이율은 이 적금가입일로부터 3개월까지 아래의 확인서류를 징구하여 적용대상 여부를 확인한 후 등록 가능합니다.

구 분	확 인 서 류	
친환경상품 제조기업으로서 제품에 친환경관 련 마크를 인증받은 업체	- 친환경제품 인증서(인증기관: 환경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 우수재활용제품 인증서(인증기관: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 술표준원)	
신·재생에너지 전문기 업으로 등록한 업체	신재생에너지전문기업 등록증 (발급기관 :산업통상자원부)	
신·재생에너지 생산 관련 발전사업자	발전사업 허가증 및 개발 행위허가서(시·도지사발급)	
일반 및 지정 폐기물 재활용업체로 허가 받거나 또는 신고한 업체	재활용업체 허가증 또는 신고 필증(재활용품목 또는 시설에 따라 시·군·구, 관할 환경청, 한국환경공단_등에서 발급)	
녹색구매 지발적 협약 체결업체	녹색구매 자발적 협약서 (체결기관 : 환경부)	
ISO 14001시리즈 인증 업체	ISO 14001시리즈 인증서	



③ 파트너 우대이율은 각 사유별 적용대상 여부를 아래의 실적산정기준월(일)을 기준으로 확인하고 해당 사유별 우대이율을 제공합니다.

구 분	적용대상	실적산정 기준월(일)
시업자응원통장 또는 KB가맹점 우대통장 가입	사업자응원통장 또는 KB가맹점우대통장 가입 고객	신규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 한 날이 속한 달의 말일
기맹점 결제계좌	당행 계좌로 카드 가맹점 대금 이체 실적이 있는 경우	신규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 한날이속한달
카드 실적	KB카드(신용/체크,개인/기업,KB카드 /KB 비씨카드 포함) 이용 실적이 30만원 이상인 경우	신규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 한날이속한달
종업원 급여이체	종업원 급여이체 실적이 있는 경우 단, 급여이체 실적은 KB국민은행과 급여이체 또는 대량이체 계약에 의한 선일자, TOP라인, 기업인터넷뱅킹에 의한 경우만 대상	신규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 한날이속한달

## 제8조 특별중도해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만기일 이전에 해지하는 경우에는 기본이율을 적용합니다. 이 때 제 7 조에서 정하는 우대이율은 가산하지 않습니다.

- 1. 이 적금의 계약기간이 1/2 이상 경과한 계좌로, 해지원금의 70% 이상을 본인명의 KB국민은행의 대출금을 상환하거나 해지일 기준 이전 3개월 이내에 계약된 본인명의 사업장 구입 또는 임차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해지하는 경우
- 2. 이 적금과 관련된 KB국민은행의 대출상품인 「적금관계대출」을 받기 위해 해지하는 경우

#### <부 칙>

이 약관은 2017년 5월 8일부터 적용합니다.

#### <부 칙>

이 약관은 2020년 4월 27일부터 적용합니다

## <부 칙>

이 약관은 2020년 10월 12일부터 신규가입고객에 한하여 적용합니다.

본 특약은 법령 및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서 제공됩니다.